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4월 25일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4월 15일, 금천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15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4년 4월 25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 제·개정 및 제명, 명칭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을 인용조항에 반영하는 등 규정 정비·보완을 통하여 공유재산을 내실있게 관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 기산일을 “기부채납일”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변경(안 제16조)
- 「초지법」 제18조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초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 신설(안 제26조제7항 신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 금액 및 분할납부 횟수에 대한 개정사항 반영(안 제33조제2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이자율을 연 3퍼센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고시가로 변경
 -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시 잔액의 이자율(안 제36조제4항)
 - 교환차금 잔액의 이자율(안 제36조의2)
 - 변상금의 분할납부 시 잔액의 이자율(안 제90조제3항)
 -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안 제90조의2)
- 변상금 징수 유예 신청시 신청서 제출조항 신설(안 제90조의3제2항 신설)
- 상위법령 제·개정 및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30조제7항제6호, 제31조제4항, 제93조)
- 띄어쓰기 정비(안 제26조, 제28조, 제32조, 제33조제2항, 제36조, 제38조, 제43조, 제45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박병규

나.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내실있게 관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16조에서는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기간 기산일을 기부채납일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변경하고

상위법인 <공유재산법 제21조1항>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기부채납일은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날로써 기부자의 실제 사용시점과는 차이가 있음에도 기부채납일을 기산일로 정하여 사용기간이 단축되는 결과초래. 따라서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준일이 '기부채납일'이 아닌 '사용허가일'이 되도록 개정

- 안 제26조 제7항에서는 「초지법」 내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초지 대부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

「초지법」 제18조

(국유지, 공유지의 대부료) 조항 신설에 따라, 초지의 대부료는 대부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음.

- 안 제33조 제2항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금액 (100만원 ⇨ 50만원) 및 분할납부 횟수에(연6회 ⇨ 연12회)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함.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료를 분할 납부할 경우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하도록 상위법 개정에 따름(2023. 8. 22.)

- 안 제36조제4항, 안 제36조의2, 안 제90조제3항, 안 제90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매각대금 분할납부, 교환차금 잔액, 변상금 분할납부, 과오납금 변환가산금의 이자율을 연 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고시가(COFIX)로 변경함.

공유재산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9조 상위법 개정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COFIX)로 분할납부하도록 함.

코픽스(COFIX)는 Cost of Funds Index의 약자로, "자금조달비용지수"를 의미하며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평균적으로 나타낸 지표

- 안 제90조의3 제2항에서는 변상금 징수 유예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징수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 본 개정조례안 종합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